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회계	1
가. 세 입	1
나. 세 출	2
(1) 총 괄	2
(2) 이 · 전용	3
(3) 이 월	4
(4) 불 용	4
 2. 예비비 지출	5
 3. 재무결산	5
가. 재정상태 분석	5
나. 재정운영 분석	7
다. 순자산변동 분석	9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11

가. 개 요 11

나. 제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의 조사 재착수 및 진실규명 추진을 위한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 13

2. 진화위운영(1031-300) 16

가. 개 요 16

나. 사고이월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이월예산 불용 방지 필요 17

다.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불필요한 세목조정 방지 필요 20

3. 진화위인건비(7002-250) 23

가. 개 요 23

나. 적절한 규모의 인건비 예산 편성을 통한 이·전용 방지 필요 24

4. 진화위기본경비(7002-250) 27

가. 개 요 27

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28

I.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 입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1억 7,800만원¹⁾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600만원을 수납함.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 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	178	96	-	82	54.0
합 계	-	178	96	-	82	54.0

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 178,024,620원

나. 세 출

(1) 총 괄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음.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3,0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 대비 92.8%인 16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00만원, 불용액은 9억 9,3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체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 음 연 도 이월액	불용액 (C)	B/A (%)	C/A (%)
본예산	추경										
16,749	16,749	-	1,281	-	±371	18,030	16,728	309	993	92.8	5.5

동 세출예산은 ‘진실화해위원회 운영’과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운영 단위사업(진화위운영 세부사업 1개)이,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 및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세부사업 1개)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예산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6,749	16,749	1,281	±371	18,030	16,728	99.9	16,763
1000 진실화해위원회 운 영 계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1031 진 화 위 운 영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진 화 위 운 영 (1031-300)	3,429	3,429	1,260	-	4,689	3,435	100.2	3,266
7000 진실화해위원회 행 정 지 원 계	13,320	13,320	21	±371	13,341	13,293	99.8	13,497
7001 진 화 위 인 건 비	6,520	6,520	-	371	6,891	6,883	105.6	6,811
진 화 위 인 건 비 (7001-150)	6,520	6,520	-	371	6,891	6,883	105.6	6,811
7002 진 화 위 기 본 경 비	6,800	6,800	21	△ 371	6,450	6,410	94.3	6,686
진 화 위 기 본 경 비 (7002-250)	6,800	6,800	21	△ 371	6,450	6,410	94.3	6,686

(2) 이·전용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²⁾가 발생하여 3억 7,100만원을 전용³⁾함.

2) 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별정직, 전문임기제) 경력반영 등에 따라 직급별 연봉 및 호봉의 평균 단가 차이가 발생하여 보수 실지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음.

3)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지원 프로그램 내 진화위기본경비 단위사업(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부터 진화위인건비 단위사업(진화위인건비 세부사업)으로 3억 7,100만원을 전용함.

(3) 이 월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3억 900만원으로, 이월 내역으로는 유해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2억 1,100만원, 2024년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9,200만원, 사건조사용 인공지능 문자인식 SW 사용구독 계약 600만원임

[전년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합 계	309	• 계약기간 미도래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용역계약 3건 사고이월
진화위운영 (1031-300)	309	• 유해 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211)
		• 2024년 OTT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92)
		• 사건조사용 인공지능 문자인식 SW 사용구독 계약 (6)

(4) 불 용

불용액은 9억 9,300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진화위운영비 9억 4,500만원, 진화위인건비 800만원, 진화위기본경비 4,000만원임.

2. 예비비 지출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

3. 재무결산

진실화해위원회 재무결산은 일반회계 1개로 편성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 분석

2024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자산은 3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9,200만원보다 8억 9,6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일반유형자산 1억 1,50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감소와 소프트웨어 감가상각으로 인해 유동자산 및 무형자산이 각각 8억 4,200만원, 1억 6,9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회계연도 말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채는 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1,000만원보다 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 근속연수 증가, 복구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4억 3,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28억 5,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3억 2,800만원 감소함.

[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자산(a)	3,396	4,292	-896	-20.9
· 유동자산	672	1,514	-842	-55.6
· 투자자산	-	-	-	-
· 일반유형자산	880	765	115	15.0
· 무형자산	259	428	-169	-39.5
· 기타비유동자산	1,585	1,585	-	-
II. 부채(b)	542	110	432	392.7
· 유동부채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장기충당부채	542	110	432	392.7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2,854	4,182	-1,328	-31.8

※ 2024(A) : 2024년 12월 31일자 잔액, 2023(B)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 종류에 대한 설명]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2024년도 위원회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46억 6,600만원에 관리운영비 146억 9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1억 6,200만원을 차감한 191억 1,3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순원가는 연구개발용역비 등 증가로 전기대비 10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관리운영비는 인건비가 전기대비 3억 6,700만원 증가하고 관리용역비 등 기타경비가 11억 9,300만원 증가하여 전기대비 15억 6,000만원 증가함. 비배분수익은 지출금반납금이 발생하여 전기대비 1억 3,200만원 증가함.

[2024년도 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666	3,596	1,070	29.8
가. 프로그램 총원가	4,666	3,596	1,070	29.8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4,609	13,049	1,560	12.0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62	30	132	440.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9,113	16,615	2,498	15.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9,113	16,615	2,498	15.0

※ 2024(A)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위원회의 순자산은 2024년 말 기준 4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4억 7,2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은 178억 8,100만원으로 국고수입 2억 7,3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기대비 4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은 정부내자산기부 감소로 전기대비 5,0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77억 8,500만원으로 전기대비 4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91억 1,300만원으로 전기대비 24억 9,800만원 증가하여 당기 기말 순자산은 28억 5,400만원임.

[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4,182	3,472	710	20.4
II. 재정운영결과	19,113	16,615	2,498	15.0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7,785	17,325	460	2.7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854	4,182	-1,328	-31.8

※ 2024(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I.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총 2,116건의 조사중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3기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의 출범 관련 개정법률안들의 처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출범 이후 조사중지 사건의 신속한 재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법률 제17392호, 2020.6.9.,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진실규명 조사대상 선정, 조사개시결정, 조사 진행, 진실규명 결정 등 진실규명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진실화해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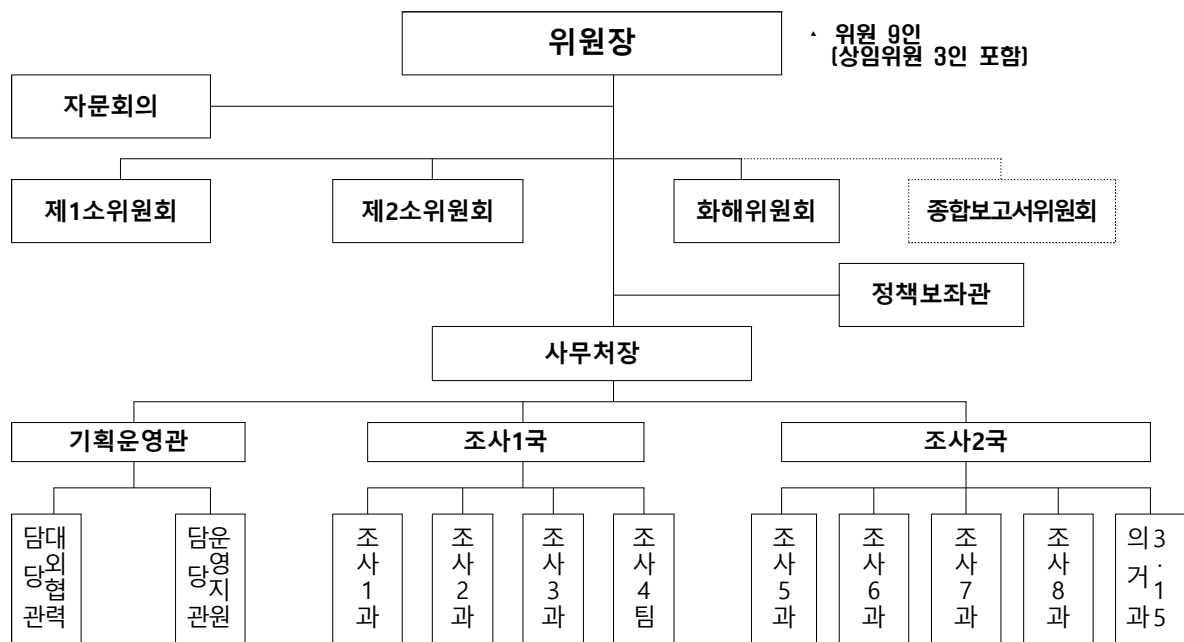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9,077	16,749	16,763
진화위인건비	6,094	6,520	6,811
진화위기본경비	5,954	6,800	6,686
진화위운영(사업비)	7,029	3,429	3,266

· 위원회 홍보	660	468	234
· 진실규명 공동수행	1,504	500	-
· 진실규명 조사(집단희생·인권침해 등 사건, 3·15의거 사건 진실규명 조사)	2,479	1,256	1034
·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조사	2,386	1,205	941
· 위원회 정리	-	-	1,057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는 9명의 위원(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기준 현원은 197명임.

[진실화해위원회 조직 및 인원 현황]



(단위: 명)

계 (총원/현원)	정원 내 (136/124)			정원 외 (80/73)			
	정무직	별정직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전문임기	사무보조
216/197	3/1	78/72	55/51	28	2	26	24/17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제2기 위원회 조사중지 사건의 조사 재착수 및 진실규명 추진을 위한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

-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⁴⁾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진실규명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⁵⁾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3·15의거의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함.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된 2025년 5월 26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진실규명조사를 위하여 배정된 총 사건수는 2만 924건으로, 이중 진실규명결정 등이 이루어져 종결된 사건은 1만 8,813건이며,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조사가 중지된 사건은 2,111건임.

-
-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진상규명)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 '25.8.12.기준)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¹⁾	종결사건				조사 중지
			진실규명	불능	각하	기타 ²⁾	
계	20,283	20,924	11,911	6,902			2,111
				676	4,113	2,113	
항일운동 등	129	131	25	14	63	12	17
민간인 집단 희생	9,975	10,191	6,094	398	801	1,533	1,365
적대세력 관련	3,898	4,096	3,197	119	332	363	85
인권침해 등	2,889	3,300	2,085	129	431	162	493
역사적 사건	208	219	44	14	9	3	149
3·15의거	492	493	466	-	1	24	2
기타	2,692	2,494	-	2	2,476	16	-

주: 1)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2) 취하 및 여순사건 등 타 위원회 이관 사건 등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23일 진실화해위원회 제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 의결안’을 의결함에 따라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진행하였음.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및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기준 마련,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배제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3건, 일부개정법률안 16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⁶⁾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기 위원회의 출범 관련 개정법률안들의 처리를 위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출범 이후 조사중지 사건의 신속한 재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과거사정리법 계류의안 목록 (19건)

* [22005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 정의원 등 13인)
* [22024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 [22027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2인)
* [220297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
* [22035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 [22037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 [22063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5인)
* [220653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 [22066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 [22067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22075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
*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33인)
* [22110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 [22112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희의원 등 25인)
* [2211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8인)
* [22113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 [22115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 [22118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2. 진화위운영(1031-300)

-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용역사업의 2024년 이월금액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미집행되었는바, 향후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여비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정 금액보다 큰 금액이 불용되었는바, 향후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및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운영’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조사 등 진실규명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K-진실화해모델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 회계연도에 예산현액 46억 8,900만원 중 34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운영	3,429	3,429	1,260	-	-	4,689	3,435	309	945	3,266
위원회대외홍보	468	468	81	-	-	549	405	92	52	234
진실규명 조사	2,961	2,961	1,179	-	-	4,140	3,030	217	893	1,975
위원회 정리	-	-	-	-	-	-	-	-	-	1,057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사고이월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이월예산 불용 방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실규명 조사’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증인·참고인 면담, 현장 및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진실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일반연구비 (260-01목) 집행을 통한 용역 발주 방식으로 수행됨.

□ 이 중 2023년 계약이 체결된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용역사업은 세종 추모의 집에 보관된 유해 3,700여구 중 유전자 감식이 용이한 유해 2,000구(이상)의 유전자 검사용 시료 채취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용역업체로 하여금 유해당 유전자 감식용 시료 2개, 유가족 인계용 시료 1개 등 총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항온항습장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추모의집에 보관된 유해 3,700여구 중 유전자 감식이 용이한 유해 2,000구(이상)의 유전자 검사용 시료 채취
 - ※ 유해 부위 식별 능력 필수
- 수집된 유해 부위의 체질인류학적 분석과 발굴정보 문서화
 - ※ 발굴년도, 발굴지역, 발굴구역, 유해 부위, 사진 등
- 유전자 감식용 시료 2개, 유가족 인계용 시료1개 총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항온항습장에 보관

자료: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DNA 시료 채취 용역사업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재가공

- ☐ 해당 용역사업의 최초 계약의뢰가 2023년 5월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제안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 23일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연내 사업 완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금 50%를 제외한 금액인 1억 1,750만원이 2024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음.
- ☐ 그런데, 업체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 미완수(유해당 3점의 시료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2점만 채취), 절단기 외의 둔기(망치 등) 사용으로 인한 시료 훼손, 관련 기록 누락 등 계약불이행 사항이 발견되어 진실화해위원회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완수금이 미지급되어 이월금액 1억 1,750만원이 불용되었음.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세종 추모의 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236,000	117,500	117,500	이월금액 미집행 (계약해지)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⁷⁾ 그 집행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의 이월금액이 계약상대자의 문제로 미집행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용역사업 진행 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 금액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이하생략)

다.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불필요한 세목조정 방지 필요

- 예산의 조정은 예산 전용보다 한 단계 낮은 예산 단위 간 금액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①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세목조정), ②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상호 융통하는 제도(내역변경)로 구성됨.
- 예산 조정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여비 본예산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4년 9월 국내여비에서의 2,2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3,459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목조정	집행액	불용액
국외여비 (220-02목)	대외협력과	9,000	22,000	41,877	△10,877
	조사1국	27,000	-	-	27,000
	조사2국	27,000	-	8,530	18,470
	합계	63,000	22,000	50,407	34,593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내역사업 내 국외여비가 실국별로 구분되어 있고, 대외협력과의 전반기 국외출장 시 조사2국의 양해를 얻어 해당 부서의 편성예산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후반기 과거사진실규명 성과공유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와 조사1국의 국외출장이 예정된 상황에서 예산부족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세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하반기 조사1국의 국외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부서에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 2,700만원과 국제포럼 집행잔액 등 총 3,459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국외업무여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일시	비용	내 역
조사2국	6.10.~6.13. 6.13.~6.17.	8,530	일본 내 거주 신청인, 피해자 참고인 조사
대외협력담당관	6.17.~6.21.	26,189	한-폴란드 과거사 진실규명 경험 공유를 통한 K-진실화해모델 정립
대외협력담당관	11.7.	15,688	국제포럼 초청자 항공료 등
합계		50,407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세목조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1국의 국외출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

여 해당 예산을 국제포럼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추후 세목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임.

- 세목조정은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불필요하게 사용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 향후 진실화해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요 예측 및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진화위인건비(7001-150)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이 발생하였는 바, 확정예산이 아닌 예산요구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집행된 것은 경력직 직원의 호봉 산정 등을 감안한 인건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적정 인건비를 편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인건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68억 9,100만원 중 68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인건비	6,520	6,520	-	371	-	6,891	6,883	-	8	6,811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적절한 규모의 인건비 예산 편성을 통한 이·전용 방지 필요

- ☐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110-01목)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⁸⁾
-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건비 부족으로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각각 4억 3,300만원, 4억 8,000만원, 3억 7,1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였음.

[2022~2024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인건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	5,257	49	433	5,733	5,716	17
2023	6,094	0	480	6,574	6,537	37
2024	6,520	0	371	6,891	6,883	8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 이중 공무원 보수(110-01목)의 경우 요구금액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된 부분도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요구 금액보다 더 큰 상황이 3년간 지속되고 있음.

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45~46.

[2022~2024년도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110-01목) 예산요구안·정부안·확정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요구안	정부안	확정 예산	집행금액
공무원 보수 (110-01목)	2022년	4,580	4,311	4,311	4,777
	2023년	4,962	4,647	4,647	4,964
	2024년	5,056	4,797	4,797	5,184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시적 조직으로의 특성상 경력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지는바, 이들 인력의 채용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다만, 조사기간 등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예산 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인건비 예산요구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인건비를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2025년 11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2026년도 예산요구안

은 작성되지 않았으나, 현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예정하는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경과를 토대로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진화위기기본경비(7002-250)

- 국가배상판결 전수조사 연구용역 실시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전액 미집행 후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나타났으므로, 추후 예산 요구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 연구용역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진화위기기본경비’는 회의 개최, 정기 조사보고서 발간, 조사업무 수행 지원, 사무보조인력 운영, 기록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64억 5,000만원 중 64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화위기기본경비	6,800	6,800	21	△371	-	6,450	6,410	-	40	6,686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이·전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필요 최소한 수준에 그칠 필요가 있고, 특히 편성예산 전부를 미집행하여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4년도 진화위기본경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260-01목) 5,00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이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위원회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국가 배상판결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모든 사건의 판결문이 열람가능한 형태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편성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민간인', '인권침해'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건 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등재 신청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기별로 주요 판결 분석과 함께 내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구용역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미공개 판결문의 존재로 인해 전수조사 연구용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2024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도 확인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요구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 「과거사정리법」상 배·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과거사 희생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진실규명결정에 의한 국가배상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 연구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의 판결문 입수 및 공유를 통해 대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추후 예산 요구 시 해당 연구용역의 목적, 구체적인 실시방안,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배정 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문 전수조사 연구용역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